

규정 해설

소화설비 할인 규정(3)

규정에 의해 우리 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소화설비 할인검사에 합격한 소화설비는 방화정보 65호에서 표시한 비와 길이 보험가입시 보험료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해 소방법과 대비, 요약하여 연재한다.

소화설비 할인규정과 소방법과의 비교

구 분	소 방 법 규	소 화 설 비 규 정
자동화재 탐지설비 (1982. 5. 7) 1. 경계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개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않을 것(단, 500m² 이하는 가능).* 2개 이상의 건물에 걸치지 않을 것.* 경계구역 600m² 이하, 한변은 50m 이하* 주출입구 투시가능시 1,000m²* 계단, 경사로 : 45m마다 1경계구역(지하 2개층 이상 : 별도회로 구성)* 수평거리 5m 이내의 비직통계 단, 하나의 직통계단으로 봄* 수평거리 50m 이내 수직부 : 동일경계구역.* 외기에 면한 부분의 경계구역 면적 : 5m 후퇴하여 설정.* 자동식 소화설비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시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법과 동일.* "* "* "* 제한없음.* 소방법과 동일.* 소방법과 동일.* 규정없음.
2. 감지기 부착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4m 미만 : 모든 감지기 가능.* 4~8m : 정온식 2종 외의 모든 감지기 설치가능.* 8~15m : spot형을 제외한 모든 감지기 설치가능.* 15~20m : 1종 연기감지기만 설치가능.* 20m 이상 : 설치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법과 동일.* "* "* "* "
3.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관, 화장실, 욕실* 반자내 : 규정없음.* 마루밑 : "* 첫간 등 외부기류 유동장소* 부식성가스 고온도 저온도 장소, 먼지, 수증기의 발생장소(연기감지기만 해당).* 실내용적 10m³ 미만장소* pipe shaft 등으로서 2개층 구획장소* 기타 화재발생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pipe shaft 등으로서 단면적 1m² 미만장소* 항온실 : 규정없음.* 금고 : 규정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법과 동일.* 반자내 0.5m 미만 제외.* 전기기기 없는 곳 제외. (전동기, 투광기, 전열기가 있는 곳은 설치)* 소방법과 동일, 단 방폭형은 특수장소 참조* 규정없음.* "* 소방법과 동일.* 화재감시 가능한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한 곳은 제외.* 갑종방화문 등 구획시 배제.

구 分		소 방 법 규		소 화 설 비 규 정																													
4. 감지기 거리		규정없음.				(단위 m)																											
5. 특수장소의 감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폭장소: 규정없음. * 분진발생장소: 연기감지기배제 * 수증기 방습지구: 연기감지기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폭장소: 방폭형 설치. * 방진장소: 차동식 분포형 공기관식 설치. 																											
6. 감지기 부착																																	
(1) 스포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착면: 30cm 이내. * 감지기 감지구역: 제한없음.('82년 삭제) * 감지기 1개당 포용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법과 동일. * 보 40cm 이상: 감지구역을 달리 설정. * 소방법과 동일(28개 면적중 2개는 다른). # 기타구조 차동식 spot 2종 : $40m^2 \rightarrow 45m^2$ # 내화구조 보상식 spot 1종 : $45m^2 \rightarrow 40m^2$ * 40~60cm보 구획면적이 차동식: $10m^2$, 정온식: $5m^2$ 초과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지기 감지면적 초과: 규정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법과 동일. * " " * 소방법과 동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기구로부터 1.5m 이상 이격 * 45° 이상 경사 부착금지. * 공침작동은도, 정온점보다 20°C 이하 장소설치. * 길이 : 20m~100m 이내 * 검출부: 5° 이상 경사금지. * 0.6m 이상 보구획: 제한없음.('82년 삭제) * 감지기 포설: 벽체 1.5m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법과 동일. * " " * 소방법과 동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지기 포설: 벽체 1.5m 이내. 상호거리 9m(6m) 이내. * 2개의 공기관 포설: 규정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간격 1.5m 이내 평행되게 설치 																														
(2) 공기관식																																	
(3) 열전대식	생략		생략																														
(4) 연기감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 15m 이상 설치(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 15m 이상 설치. 단, 15m 미만은 복도입구에 연기감지기 설치시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도, 통로 30m 이상(대상). * E/V실 등, 15~20m 사이 장소 * 지층, 무창층, 11층 이상층. * 천장이 낮은 실내: 천장의 높이 규정없음. * 좁은 실내: 실내면적 규정없음 * 낮고 좁은 실내: 출입구측에 설치 * 복도, 통로: 보행거리 30m마다 1개. * 수직부: 수직거리 15m마다 1개 * 부착면 : 천장에서부터 0.6m 이내 : 벽, 보로부터 0.6m 이내 * 배기구가 있는 경우 그 부근에 설치. * 감지기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도, 통로 10m 이상. * 소방법과 동일. * " " * 높이 : 2.5m 이하의 실내를 말함. * 면적 : $40m^2$ 이하의 실내를 말함. * 소방법과 동일. * 면적 다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1종, 2종</th> <th>3종</th> </tr> </thead> <tbody> <tr> <td>4m 미만</td> <td>150</td> <td>50</td> </tr> <tr> <td>4~8m</td> <td>75</td> <td>—</td> </tr> <tr> <td>8~20m</td> <td>75</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1종, 2종	3종	4m 미만	150	50	4~8m	75	—	8~20m	75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1종, 2종</th> <th>3종</th> </tr> </thead> <tbody> <tr> <td>4m 미만</td> <td>150</td> <td>50</td> </tr> <tr> <td>4~8m</td> <td>75</td> <td>—</td> </tr> <tr> <td>8~20m</td> <td>40</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1종, 2종	3종	4m 미만	150	50	4~8m	75	—	8~20m	40	—				
구 분	1종, 2종	3종																															
4m 미만	150	50																															
4~8m	75	—																															
8~20m	75	—																															
구 분	1종, 2종	3종																															
4m 미만	150	50																															
4~8m	75	—																															
8~20m	40	—																															

구 分	소 방 법 규	소 화 설 비 규 정
7. 중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신기 : 감지기사이 도통시험이 불가능한 구조는 중계기 설치. * 중계기 설치장소 : 점검상 편리 방화상 유효 * 수신기 이외의 장소에 전원 공급 : 차단기 설치, 정전표시, 전원시험장치 설치. * 중계기 : 도통시험 및 예비전원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법과 동일 * " * " * "
8. 음향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량 : 90㏈. * 발화총 및 직상, 직하총에 제한 경보(해당총에 한해 경보) (5층 이상 3,000m² 이상 건물) * 표용거리 : 25m(수평거리) * 방폭, 방진—규정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법과 동일(단 주음향장치의 규정은 없음) * 소방법과 동일. * " * 가연성가스, 분진 등이 체류하는 장소는 방폭, 방진조치.
9. 발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용거리 : 50m 이하(보행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법과 동일.
10.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전원 : 교류저압의 옥내간선. * 비상전원 : 1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용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비상전원—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용량.
11. 수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층 이상 : P형 1급, R형 * 연면적 350m² 초과 : P-1급, P-2급, R형 * 가스누설탐지기 설치시 : GR형, GP형 또는 가스누설탐지설비, 수신부 별도 설치. * 기타건물 : P-1급, P-2급, R형 * 상사 근무장소에 설치. * 경계구역 일람도 설치. * 경보음량 및 음색구분. * 지역경제구역 표시. * 종합방재반 : 부설회로의 연동을 표시하는 경계구역 표시. * 설치위치 : 0.8m~1.5m *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개 이상의 수신기 : 상호 통화설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없음. * 소방법과 동일 * " * " * " * 제한없음. * 소방법과 동일.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 온도, 습도, 진동, 충격 등의 영향이 없는 장소. * 소방법과 동일. * 설비 배치도. 수신기 회로도 취급설명서 보수점검 기록표 예비품(램프 및 휴우즈)
12. 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V 이상의 다른 전선과 동일관, 더트몰드, 풀박스 등 공동사용 금지 * P형 수신기 공통선 : 7회로 이하 * 송배선식 감지기 배선 *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 * 절연저항 : 0.1MΩ 이상 * 감지기 회로저항 : 50Ω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법과 동일. * " * " * " * " * "